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26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조경태・김소희・곽규택

서천호 • 김상욱 • 김예지

김용태 • 한지아 • 최은석

서명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란·외환의 죄, 반란·이적죄,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%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,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4항 중 "「군형법」"을 "제24장(살인의 죄), 「군형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퇴직급여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	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		
제한) ① ~ ③ (생 략)	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복무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	4		
제2편제1장(내란의 죄)ㆍ제2장			
(외환의 죄), <u>「군형법」</u> 제2편	제24장(살인의		
제1장(반란의 죄)ㆍ제2장[이적	<u>죄), 「군형법」</u>		
(利敵)의 죄], 「국가보안법」			
(제10조는 제외한다), 「군사기			
밀 보호법」(제13조의2와 제15			
조에 한정한다)에 규정된 죄를			
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			
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			
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			
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			
하되,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			
다.			